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기록학적 고찰*

Study of the Progressive Party Case Records through the Lens of Archival Science

이주영(Lee, JuYoung)** · 전현수(Jeon, HyunSoo)***

1. 서론
2.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의 구성
3. 수사기록: 절차적 적법성 문제
4. 재판기록: 기록의 증거능력
5. 결론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2181).

** 경북대학교 기록학과 박사수료, 대구광역시경찰청 기록연구사(jylee2452@gmail.com).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jeonhs@knu.ac.kr).

■ 투고일: 2023년 06월 29일 ■ 최초심사일: 2023년 07월 03일 ■ 최종확정일: 2023년 07월 15일.

■ 기록학연구 77, 109-150, 2023, <https://doi.org/10.20923/kjas.2023.77.109>

〈초록〉

이 글은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기존 연구 동향과는 달리 경찰-검찰-재판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완결된 유기적인 기록군, 즉 기록의 생애주기적 관점 속에서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기록의 속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기록학적 시각으로 새롭게 분석한 것이다. 먼저 생산기관별로 편철된 기록물의 형태와 기관별로 주요하게 생산된 사건기록이 무엇인지 출처별 특성을 기관별로 위임된 법령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경찰·검찰·특무대에서 생산한 수사기록과 기소 이후 재판과정에서 생산된 공판기록을 살펴보면서 기록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가지는 증거로서 불충분한 지점과 위법성에 대해 기록 특성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형사소송법의 증거력 이전에 기록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록학적 속성인 신뢰성, 진본성, 무결성 모두를 가지지 못하는 기록임을 증명했다.

주제어 : 진보당, 사건기록, 증거, 기록의 속성,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Abstract〉

Prior researchers interpreted the records of criminal cases involving the Progressive Part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In marked contrast to existing trends, this study examines the Progressive Party case records through the lens of archival science. This study dissects the Progressive Party case records as a single and complete record group and at each stage of their life cycle from police investigation through criminal prosecution to trial. This approach enables a holistic analysis of archival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This study begins with an appraisal of the nature and types of case records generated and maintained by the various agencies in light of the investigatory authorities delegated to each institution. This study then dissects the police, prosecution, and Counter Intelligence Corps records leading up

to the indictment of Progressive Party members as well as the court records of the trial that followed. In particular, this study reveals the insufficiency and illegality of the evidence against the defendants in the Progressive Party case from an archival standpoint. Setting aside the admissibility or strength of the evidence under criminal law,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at the records lack reliability, authenticity, and integrity—the fundamental attributes required for evidentiary efficacy of records from an archival standpoint.

Keywords : Progressive Party, case records, evidence, record characteristics, reliability, authenticity, integrity

1. 서론

진보당 사건¹⁾이 일어난 지 반세기가 지났다. 진보당 사건은 이승만 정권이 정치적 경쟁자로 급부상한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체포하여 기소한 사건으로, 적법한 절차를 내세워 사형을 집행한 사법적 살인 사건이었다.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1958년 1월 14일 체포된 이후 1959년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1년 6개월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 및 검찰 수사, 1·2·3심 재판과 재심 청구까지 가능한 모든 사법 절차가 동원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총 42권, 13,997장의 사건기록²⁾이 생산

1) 진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은 국가기록원에서 구축한 사이트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진보당 사건(1958~1959년)』 <https://www.archives.go.kr/theme/next/choba/viewMain.do>을 참고하기 바란다.

2)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1022호)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사건기록이란 수사, 재판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사건기록은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재판기관인 법원에서 생산된 기록이 핵심을 이루지만, 교정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도 포함한다.

되었다. 이 기록의 생산기관인 서울지방검찰청은 이 기록에 『공안사범 기록』이라는 표제를 붙이고, 분류번호 828.2 영구보존으로 분류³⁾하여 보관하다 2005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였다. 국가기록원은 검찰청 기록에 법원 판결문 2권을 더하여, 『형사사건기록: 진보당 사건기록1~44 권』(이하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으로 약칭)⁴⁾으로 새로운 표제와 고유관리 번호⁴⁾를 부여해서 영구보존기록물로 관리하고 있다.

2008년 국가기록원은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포함하여 주요 형사사건기록⁵⁾을 공개하였다. 이것은 2006년 기록관리 법령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으로써 가능해진 일이다.⁶⁾ 1999년에 제정된 기록관리 법령은 생산 후 30년이 지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서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공개의 원칙이나 재분류의 주기에 대한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2006년 정부는 생산 후 30년이 지난 비공개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하는 것으로 기록관리 법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역사적 사건, 특히 공안사건 기록에 대해 정부가 견지해온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비공개 관행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공개 방침으로 전환되었다. 진보당 사건을 포함한 주요 형사사건 기록 역시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공개 재분류 절차를 거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공개된 형사사건기록과 관련한 연구는 두 분야로 나뉘 볼 수 있다.

3) 공문서종별보존기간책정기준. 1964.

4) BA0802879~BA0802920, BA0383421, BA0079722.

5) 국가기록원은 1945~1968년 시기에 생산된 공안사건 기록 중 대중의 관심이 높은 ‘진보당 사건’, ‘김창룡 저격 사건’, ‘3.15부정선거와 4.19혁명’, ‘1949~1965년 필화 사건’ 기록을 우선적으로 공개하였다.

6) 1999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오랜 세월 사무관리규정의 몇 가지 조항만으로 국가기록을 관리해 온 관행을 타파하고 국가기록을 독립된 법률에 의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최초의 법령에서는 기록관리의 국제적 표준과 최신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기록물 공개재분류에 관한 규정 등이 새로 보완되었다.

먼저 기록학적 연구 성과로 사법 절차에 따라 기관별로 생산되는 사건 기록을 유형화하여 정리한 연구(김병호 2007; 전명혁 2008; 강선옥 2009; 이승일 2010; 이현정 2010; 박성진 2017)를 들 수 있다. 그중 공안사건 기록의 생산, 정리 과정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전명혁, 2008), 검찰청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유형별로 정리한 연구(이현정, 2010)가 대표적인 연구다. 이현정의 연구는 검찰기록을 사건기록, 재판기록, 행정기록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기록의 보존 전략을 제시하면서 사건기록의 종류를 실무자적 시선에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명혁은 국가기록원에서 공개 결정된 형사사건기록 중 공안사건 기록을 별도로 소개하였는데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건별 기록의 성격과 유형을 정리하였다. 두 연구 모두 형사사건기록의 개념과 생산된 기록을 특성별로 분류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 사건기록이 생산되고 편철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진보당 사건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07; 국가기록원 2008; 오유석 2008; 김윤경 2011; 박보영 2021)다. 그중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생산한 조사보고서⁷⁾는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최초로 활용하여 사법 절차의 위법성과 판결의 정치탄압적 성격을 진실규명한 것으로 진보당 사건 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다. 진실규명 움직임과 더불어 국가기록원에서도 공개된 형사사건기록을 활용하여 사건별로 기록의 구성을 설명하고 역사적·기록학적 의미를 되새기는 자료를 출간(국가기록원 2008)하였고, 이에 오유석은 진보당 형사사건기록

7) 진화위 보고서의 진실규명 결정 요지는 민간인인 조봉암과 양이섭에 대한 특무대의 조사 자체가 위법이며, 양이섭을 불법 감금하여 조사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생산된 임의성 없는 자백만을 근거로 조봉암을 간첩죄로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사유로 인정, 진실규명을 한 것이다. 이 글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진화위에서 판단한 위법 사항을 기록 원본을 보며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을 생산기관별로 소개하고, 원본을 함께 배치하면서 진보당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였다.(오유석 2008)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과 재심에서의 무죄 판결 이후 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의 역사적 평가가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활용하여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양이섭이라는 인물에 대한 연구(김윤경 2011),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당대 사회문화를 담아내는 텍스트로 미시사적 접근을 제안하는 연구(박보영 2021)가 가장 최근의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부진한 것은 1945~1960년 생산된 형사사건 기록 대부분이 국한문 필사문서로 생산되어 가독성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진보당 형사사건기록 중 공판기록에 대해 탈초 작업을 수행하고 역사학적 기록학적 해제와 주석을 붙인 진보당 사건 자료집이 출간되어 학술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어⁸⁾ 향후 풍부한 연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은 그 토대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즉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경찰-검찰-재판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완결된 유기적 기록군, 기록의 생애주기적(Record Lifecycle) 관점 속에서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의 편철 구성을 새롭게 재편성하고, 원본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는 기록의 속성을 기록학적 시각으로 새롭게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을 통해 생산된 사건기록은 당시 「형사소송법」이라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각 기관에 위임된 규칙에 의해 생산해야만 했다. 경찰은 「사법경찰관집무규정」에 따라, 검찰은 「검찰청사무규정」에 의거해서, 법원은 「조선총독부재판소급검사국서기과처무규정」에 근거하여 사건기록을 생산하고 보존했는데, 진보당 형사사건기록 역시 이 과정에서 생산·정리되고 보존·활용된, 기록의 생애주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기록물이

8) 전현수 편저, 『진보당 형사사건기록』 1~3권(서울: 도서출판선인, 2023)

다. 따라서 당시의 형사사건기록을 규정한 과거 법령을 보면서 사건기록 편철의 원리와 구성을 파악한 후, 군(Group) 개념을 도입하여 편철을 재구성해 볼 것이다.

규정에 의해 생산된 진보당 형사사건기록 중 일부는 재판에서 법적 증거로 작용하여 사형 판결의 직접 증거가 되었다. 그랬던 증거가 60년이 지난 지금 위법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오염된 증거로 인정되어 진실 규명과 재심 판결 무죄의 근거가 되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가지는 증거로서 불충분한 지점과 위법성에 대해 기록 특성의 관점에서 탐구해 볼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기록의 속성을 법적, 증거적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원종관 2008; 최영민 2018; 윤은하 2019; 박서인 2020; 설문원 2022)에서 착안하였다. 따라서 경찰·검찰·특무대에서 생산한 수사기록과 기소 이후 재판과정에서 생산된 공판기록의 기록 원본을 통해 형사사건기록 중 어떠한 기록이 오염된 증거로 인정되었으며 간첩죄의 근거가 된 양이섭사건 기록이 가지는 위법성에 대해서 기록 특성인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도록 할 것이다.

특히 연구자들이 의문을 품은 기획 수사에 대한 단초, 간첩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실행된 조봉암에 대한 치밀한 수사의 시작, 모호한 간첩 혐의와 마침내 나타난 김사장 양이섭,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면서도 그 속에 어떤 진실과 모순들이 혼재하고 있는지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통해 그 맥락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의 구성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은 모두 4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은 크게 〈주요 기록군〉, 〈하부 기록군〉, 〈양이섭사건 기록군〉이라는 세 개의

기록군⁹⁾으로 나뉘어 진다. 1권부터 22권까지는 조봉암과 진보당 주요 간부들에 대한 경찰·검찰 수사기록, 1~2심 공판기록 및 재심청구 기록이다. 여기에 재심 기각 기록과 1~3심 판결문인 43~44권을 더하면 하나의 완결된 진보당사건 **주요 기록군**(1~22권과 43~44권)이 된다. 주요 기록군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권에서 3권 중반까지는 진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기록이 편철되어 있다. 3권 중반부터 11권까지는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록이 편철되어 있다. 12권에서 13권 중반까지는 검찰로 송치된 이후의 수사기록이며, 13권부터 22권까지는 기소 이후 재판기록이다.

주요 기록군에서 파생된 **하부 기록군**(23~33권)은 진보당 사건 보강 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다. 이것은 당 비밀조직 관련자들, 당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인물들에 대한 경찰·검찰 수사기록이다. 진보당의 비밀당부, 특수조직, 여명회 등과 관련된 최희규, 안경득, 김안국, 박준길, 권대복에 대한 경찰 수사기록이 23권부터 26권까지 편철되어 있고, 이들이 검찰로 송치되어 제1회 공판을 받기까지의 수사기록이 27권에 편철이 되어 있다. 이와 함께 특수조직 담당자로 지목된 진보당 조직부 간사 전세룡에 대한 수사기록이 30~31권에 별도로 편철되어 있다. 정태영의 비밀문건, 강평서와 관련된 수사기록은 28~29권에 편철되어 있다. 그리고 이동화와 이상두의 불온 편지 관련 수사기록은 32권에, 형무소 수감 이후 불거진 일명 통방사건 관련자 이동현, 임신환 간수에 대한 수사기록은 33권에 편철되어 있다. 하부 기록군 관련자들은 공판 개시 후 조봉암 사건에 병합되었고, 이들의 공판기록은 앞서 말한 주요 기록군에 포함되어 있다.

34~42권은 **양이섭사건 기록군**이다. 이 기록은 양이섭에 대한 특무대

9) 기록군은 보존기록관에서 관리상 목적을 위해 출처에 기반하여 구성한 기록의 집합체 개념이다. 이 기록학적 기본 개념을 차용하여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3개의 기록군으로 나뉘보았다. 기록학회(2005, 55)

의 수사기록과 검찰 송치 후의 보강 수사기록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34권에서 37권까지는 양이섭에 대한 수사기록이, 38권부터 39권까지는 조봉암에 대한 수사기록이, 40권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록이 편철되어 있다. 41권과 42권에는 검찰 송치 이후부터 재판 병합 전까지의 수사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 사건 역시 진보당 사건에 병합되어 재판기록은 주요 기록군에 함께 편철되어 있다.

이렇듯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은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사건기록이 중심이 되어 하나의 기록군을 형성하고, 관련 인물들을 추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 하부 기록군을 이루며, 진보당 사건과 함께 병합된 양이섭사건 기록이 별도의 기록군을 이루고 있다.

〈표 1〉 진보당 형사사건기록 목록

그룹	권호	생산기관	주요내용
주요기록군 (1~22+43~44)	1~3	경찰	경찰 내사 기록
	3~11	경찰	조봉암 외 진보당 간부 경찰기록
	12	검찰	조봉암 외 진보당 간부 검찰기록
	13~17	법원	1심 재판 기록
	18~21	법원·교정	양이섭 변호인 접견기록, 2심 재판 기록, 상고이유서
	22	법원	재심 청구 관련 기록
	43~44	법원	1심, 2심, 3심 판결문
하부기록군 (23~33)	23~26	경찰	비밀당부, 특수조직, 여명회 관련자 경찰기록
	27	검찰	비밀당부, 특수조직, 여명회 관련자 검찰기록
	28	경찰	정태영 경찰기록
	29	검찰	정태영 검찰기록
	30	경찰	비밀 조직 관련 전세룡, 김정학 경찰기록
	31	검찰	비밀 조직 관련 전세룡, 김정학 검찰기록
	32	경찰, 검찰	이상두 불온편지 경찰·검찰기록
	33	경찰, 검찰	통방사건 관련자 경찰·검찰기록

그룹	권호	생산기관	주요내용
양이섭사건기록군 (34~42)	34~37	특무대	양이섭 특무대 기록
	38~39	특무대	조봉암 및 조봉암 측근 특무대 기록
	40	특무대	조봉암 측근 특무대 기록
	41	군검찰	조봉암 측근 예심조서
	42	검찰	양이섭, 조봉암 검찰기록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은 「형사소송법(1954)」이라는 상위법령에 따라 각 기관에 위임된 사건기록 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생산되었다. 사건이 일어난 1958~1959년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사법경찰관집무규정(1912)」¹⁰⁾에 따라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송치하였다. 검찰 송치 이후 생산된 사건기록은 법무부령 「검찰청사무규정(1956)」¹¹⁾에 따라 정리되었고, 재판이 시작되어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재판 기록은 「조선총독부재판소급검사국서기과처무규정(1937)」¹²⁾에 따라 생산관리되었다.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에는 육군특무대(현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군 사법의 최상위 기본법은 「국방경비법(1948)」¹³⁾이었다. 그런데 「국방경비법」은 범죄의 유형과 처벌에 중점을 둔 것으로 수사절차 규정은 미비했다. 이 때문에 군인, 군속(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는 형사소송법(1954)과 「헌병과 국군정보기관의 수사 한계에 관한 법률(1949)」을 준용하였다. 당시 민간인이었던 양이섭에 대한 육군특무대의 수사는 동 법률 제1조 “군사 또는 군인, 군속의 범죄와 관련 있는 일반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수사할 수

10) 현행 법령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수사규칙」을 위임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해당한다.

11) 현행 법령으로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해당한다.

12) 현행 법령으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 해당한다.

13) 「국방경비법」(1948)은 「군법회의법」(1962), 「군형법」(1962)으로 전면 개정되며 폐지되었다. 「군법회의법」은 「군사원법」(1988)으로 개정되어 현행 법령으로 유지 중이다.

있다.”는 조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무대 사건기록 역시 경찰 수사 규정에 따라 생산되고 편철되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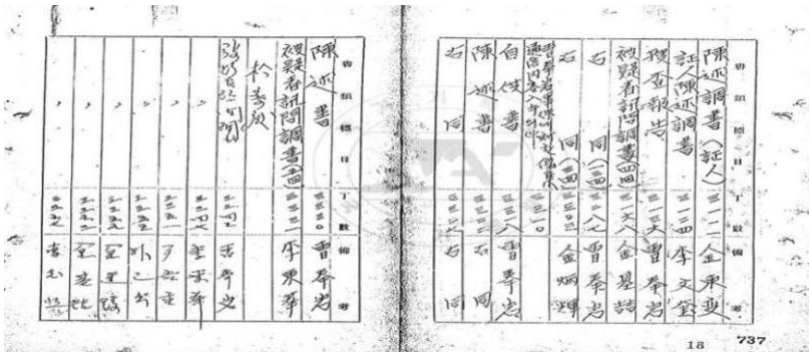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의 생산관리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경찰의 「사법경찰관집무규정」이다. 최초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기록정리 원칙이 향후 사건기록 정리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산기관 고유의 기록정리 원칙을 지켜주는 “원질서 존중¹⁵⁾”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4월 1일 제정된 이 규정¹⁶⁾ 제42조 및 제44조에는 “사건송치 시 기록목록, 의견서, 송치서, 피고인 소행조서를 송부해야 하며, 기록은 작성한 순서에 의해 편철하고, 매 장마다 정수를 기입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1959년 제정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은 사건기록 편철과 관련한 실무적 관행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규정 제50조에는 송치서류를 1. 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서류표목, 4. 의견서, 5. 기타서류 순으로 편철하도록 강제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당 형사사건기록도 「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제50조¹⁷⁾에 따라 편철되었다. 진보당 형사사건기록 역시 사건송치서로 시작된다. 사건송치서는 경찰 수사 결과 범죄혐의점이 존재하여 검찰로 사건을 보낸다는

-
- 14) 다만 「국방경비법」을 따른다면 사건은 양이섭이 군인 또는 군속이거나 이들과 관계된 일반인 신분으로 특무대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군인 또는 군속의 신분이었다면 그가 HID정보원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이들과 관계된 일반인의 신분이었다면 관련자가 있어야 한다.
 - 15) 기록을 정리할 때 생산자가 구축한 기록의 조직 방식과 순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록학의 기초 개념이다. 기록학회(2008, 170)
 - 16) 1959년 12월 31일 법무부령 「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으로 새롭게 제정되기까지 일제강점기 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무려 47년간이나 수사의 기본 준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당시 전국검찰감독관 회의에서 홍진기 법무장관의 지시사항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홍장관은 명치 45년에 제정된 「사법경찰관집무규정」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어 온 것이 현실과 모순이 많으며 새롭게 제정된 규정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1960년 2월 2일 동아일보 3면
 - 17) 일선의 관행이 부령에 녹아든 것인지, 새로운 부령에 따라 기록물 편철을 새롭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진보당 형사사건기록 모두 1959년 제정된 부령에 기초하여 정리되었음을 확인했다. 아마 사건이 종결된 후 현행규정에 맞게 새롭게 편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결정 문서이며, 죄명과 피의자명, 구속일시 등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이다. 현재도 송치되는 모든 사건에 송치결정서가 맨 앞장에 편철된다. 이후 범죄의 증거인 압수물을 정리한 압수물 총목록이 첨부된다. 다음으로는 서류표목이 편철되는데, 이 서류표목은 현재 기록목록(목차)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한 자료를 건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목록이며, 송치 이후 검찰 역시 경찰이 작성한 서류표목에 연달아 검찰이 생산한 수사기록을 건별로 목록화하여 기입하였다. 그리고 법원에서 도 1심이 끝날 때까지의 기록을 연달아 서류표목에 기입하였다. 이 서류표목은 생산기관이 구분한 사건별 기록 편철의 유형을 보여주며, 하나의 사건을 아우르는 기록의 목록 역할도 하고 있다. 진보당 형사사건기록 1권의 서류표목은 1권부터 제1심 재판이 끝나는 17권까지의 기록을 포함한다. 2~3심 기록이 별도의 서류표목으로 묶여 있으며(18~21권), 재심청구 관련 기록인 22권 앞장에 별도의 서류표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1~22권이 합쳐져 중요 기록군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림 1〉 진보당 형사사건기록 1권의 서류표목



경찰에서 작성한 이동화의 피의자신문조서(5회) 다음으로 검찰청, 조봉암의 진술서가 연이어 나타난다. 이는 서류표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기할 점은 서체가 바뀐 것을 통해서 생산의 주체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기록학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원본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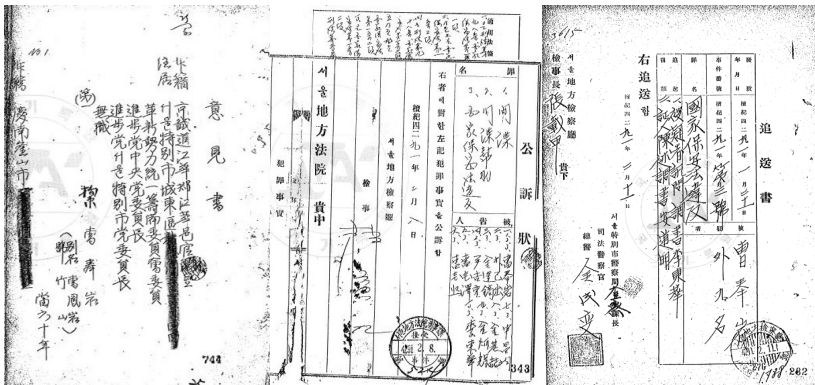
서류표목 이후로는 의견서를 비롯해서 본격적인 사건기록이 편철된다. 의견서는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사건에 대한 범죄사실을 피의자별로 정리한 사건 요약서라 할 수 있다. 이 의견서에 기술된 범죄사실은 향후 공소제기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데, 대부분 경찰이 정리한 의견서의 논리와 논점을 기준으로 혐의점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초로 생산된 이 의견서가 증거입증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의견서는 피의자별 인적 사항과 범죄경력에 있는 자들의 범죄경력 여부를 인물별로 제시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본격적인 범죄사실이 시작되는데, 인적 사항에서 제시됐던 순서별로 피의자별 개인 이력이 제시되고, 피의자별 범죄사실이 순서대로 서술된다. 범죄사실 서술이 마무리되면, 각 피의자별로 기소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검사장에게 기소 처분을 요청하는 것으로 의견서는 마무리된다.

의견서 뒤에는 실제 수사를 하며 생산된, 가공되지 않은 1차 기록들이 증거의 형태로 첨부된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상부에 수사 현황을 보고하는 내사보고, 수사보고, 동행보고, 인지보고, 발견보고 같은 보고건, 압수수색영장, 차압조서, 구속통지서와 같은 절차적 통지건,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자공서) 같은 진술조서들이 사건이 진행된 시간순대로 편철된다.

이렇게 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서류표목, 의견서, 기타 증거서류가 순서대로 편철된 1차 사건기록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의 보강수사가 시작된다. 검찰의 보강수사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경찰조사에서 했던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의 신문이 주가 된다.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변호임선임서 등이 시간 순서에 따라 편철된다. 이는 「검찰청사무규정(1956)」 제44조 “기록을 작성하였을 때는 표지와 목록을 붙이고, 작성한 순서대로 가철하여 목록을 기입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찰 수사기록에 이어 순서대로 가철한 후 서류표목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기록은 공소장의 작성이다. 공소장은 형소법(1954) 제254조에 의해 작성이 되었는데, 공소장은 피고인의 성명 및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실제 피고인 별 성명과 죄명이 나열된 후, 기소죄명에 따라 피고인별 공소사실을 서술하는 것으로 공소장은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검찰 사건기록 부분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록이 추송서(追送書)이다. 이 추송서는 사건이 송치된 후에 새로운 증거나, 서류, 물건을 재차 송치해야 할 때 경찰이 추송서를 첨부하여 검찰로 추가 송치하는 문서로, 대부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접수되어 내용과는 상관없이 사건 진행 순서에 따라 가철 된다고 볼 수 있기에, 수시로 그리고 맥락 없이 편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 의견서, 공소장, 추송서



좌측: 제1권에 수록된 조봉암부터 이동화까지 포함된 주요 기록군 관련자들에 대한 (송치)의견서, **중앙:** 제13권에 수록된 주요 기록군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 **우측:** 제12권에 수록된 추송서. 내외문체연구소 수색 당시 발견된 문건과 관련하여 이동화 추가 피의자신문조사와 증인진술조서가 추송된 기록이다.

수사기록 중에 특기할 만한 기록이 특무대 수사기록 속에 존재하는 “예심조서”이다. 이 기록은 당시 군 사법제도에만 존재하는 특정한 절

차에 따라 생산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민간사법제도와 달리 군에서는 수사(특무대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방경비법(1948)」에 의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군법회의에 회부 할 사건은 동법 제65조에 따라 예심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민간 절차와 다른 군 사법제도의 특징¹⁸⁾이라 할 수 있다. 특무대 사건기록 속에도 이 “예심조서”가 일부 존재한다. 예심조사관은 법무부 장교(현 군법무관)가 수행하며 1차 수사에 대한 보강조사나 새로운 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법무장교는 피의자 예심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민간 사법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유형으로 생산된다. 당시 특무대 조사를 받던 피의자 중 예심조서를 작성한 이는 이정자, 조규진 두 명이다. 이 두 명이 예심조사를 받은 후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이후 검찰로 이첩되었다.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시작되면 수사기록이 아닌 재판기록으로 기록 유형이 바뀐다. 재판기록의 유형과 범위는 형소법(1954) 제6장 서류에 규정되어 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로는 공판정에서 생산되는 공판조서와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서 생산되는 조서, 공판 외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 생산되는 각종 조서가 재판기록의 범주에 해당하며, 이외 각 심급별 불복의 이유를 제출한 상고이유서, 재심청구서 등이 공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재판기록 중에는 공판조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공판조서는 재판장과 검사, 피고인, 증인 간의 문답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재판기록 역

18) 국방경비법 제65조에는 고등군법회의에 회부할 피고사건은 완전공평한 예심조사를 하지 않고는 차를 심판에 회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심 제도는 일제강점기 형사소송법 절차 중 하나로 검사가 예심을 청구하면 판사가 수사와 재판 모두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였는데, 인신구속의 제한 규정이 없어 판사가 수사에 목적을 둔다면 피고인을 제한 없이 잡아둘 수 있어 인권유린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반대로 공소제기에 신중함을 위해 쓰인다면 인권 보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절차였다. 이 제도는 해방 이후 형사소송법에서는 폐지되었지만, 군법에서는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 사건 시간 순서대로 편철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선총독부재판소검사국서기과처무규정(1937)」¹⁹⁾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공판조서와 함께 중요한 기록은 각 심급별 판결문과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신립서(上告申立書, 현 상고이유서), 재심청구서²⁰⁾ 등이다. 이중 피고가 재판부에 상고, 재심을 요청하는 기록들은 모두 공판조서와 함께 시간순으로 편철되어 있으나, 재심 기각 결정 및 1~3심 판결문은 43권, 44권에 별도로 편철되어 있다. 이는 「검찰청사무규정(1956)」 제 121조의 종결된 사건기록은 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존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보존하게 되었는데, 판결문은 어떠한 사건이든 모두 영구로 책정되기 때문에 관리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편철하여 보존해 온 관례에 따른 것이다.(이현정, 2010) 이에 진보당 형사 사건기록 역시 판결문만 별도로 편철²¹⁾하여 가장 마지막 43권, 44권에 배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기할 만한 기록이 바로 교정기록인데, 양이섭과 변호인의 접견 기록이 재판기록(19권)에 편철되어 있다. 변호인 접견 기록은 교정기록 중 가장 중요한 기록인 ‘수용기록부²²⁾’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교정기관에서 생산한 기록으로, 편철된 접견 기록도 서울형무소

19) 진보당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1958년의 법원의 기록관리 실무 규정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마련된 규정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1959년 9월 1일 「법원 사무규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규정은 폐지되었다.

20)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의 경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이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신문 보도 및 선행연구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피의자 측의 항소이유서는 별도로 생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1) 이러한 관행은 경찰에서도 마찬가지다. 가령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 기록을 보면 경찰청 기록관리기준표(2022)에 보존기간 5년으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건들의 최종 판결문은 영구로 보존하기에 판결문만 별도로 편철 보존하고 있다.

22) 수용기록부는 수용자와 관련된 30여 종의 기록을 수용자별로 모아 편철한 기록으로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2022)에 의하면 수용기록부(카드)는 준영구로 책정되어 있다.

접견표 용지에 작성되어 있다. 교정기관에서 생산한 기록이 재판기록에 편철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교정기관의 최상위 법령인 「행형법(1950)」²³⁾이나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행형법시행령(1956)」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제62조 4항 “관계기관으로부터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토대로 판단해 본다면, 당시 재판업무 수행이나 범죄의 수사과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정기관인 서울형무소에 접견 기록 제출이 요청되었고, 요청된 자료 일부가 제공되어 재판기록에 함께 편철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2심 재판에서 검사가 양이섭에 대한 변호인 접견 대장을 증거물로 제출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편철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주요 기록군, 하부 기록군, 양이섭사건 기록군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각 기록군에는 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서류표목, 의견서, 1차 증거서류(주로 피의자신문조서) 순으로 편철되어 있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보강 수사기록(주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순으로 편철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추가 수사기록이 있을 시 추송서와 증거서류들이 기록 사이에 편철되어 있으며, 송달증, 수령증, 선임계, 확인서, 보석신청서, 출두서와 같은 절차적 통지 건들도 시간 순서대로 질서 없이 편철되어 있다. 재판 시작 후 공판조서, 상고 관련 기록은 주요 기록군에 편철되어 있다. 하부 기록군과 양이섭사건 기록군은 각각 1심 1회 공판기록까지 해당 기록군에 편철되었으나, 그 이후 재판은 모두 주요 기록군 13권 2회 공판 이후 병합 순으로 합철되어 있다.

23) 현행 법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2)」이다. 1950년 처음 제정된 「행형법」은 교정 관계 법령의 노후화, 수용자 처우 개선 및 인권 신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2008년 현 법령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3. 수사기록: 절차적 적법성 문제

경찰 수사기록의 구성은 소 제기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고소·고발사건인 경우 고소인의 고소·고발장부터 편철이 시작된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는 수사단계, 수사의 과정들을 정리하여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정리단계를 거친다. 이와 달리 내사(입건 전 조사)사건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사전에 필요하다. 따라서 내사단계가 추가되어 내사단계, 수사단계, 사건정리단계의 순으로 기록이 편철된다.

진보당 사건 역시 경찰에 의해 내사되어 사건화된 것으로, 오랜 기간 내사해 온 수사기록이 1차 증거 서류에 가장 먼저 편철되었다. 이는 집무규정(1959) 제17조 범죄의 내사(범죄에 관해 신문, 출판물 기사, 익명의 신고, 풍설이 있을 때에는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와 동 규정 제18조(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이 기록이 위에서 언급한 3개의 기록군 모두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그 중 특히 주요 기록군의 내사기록은 1~3권에 편철해야 할 만큼 분량이 많다. 그에 반해 하부 기록군과 양이섭사건 기록군은 각각 23권과 34권에 내사기록 일부가 편철되어 있다. 주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내사(인지)인 만큼 목적이 분명하고, 수사 기간이 짧아 관련 기록도 소략한 것이다.

내사단계의 기록은 초기 수사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내사의 시작은 정우갑과 조봉암이 회합했음을 인정한 「인지보고서(1957년 9월 2일)」이고, 인지의 근거는 조봉암과의 회합을 인정한 정우갑의 「자공서(9월 1일)」이다.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는 범죄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점에 작성된 보고서가 「인지보고서」이다. 진보당 사건의 시작은 1957년 9월

2일이지만, 수사의 원칙상 범죄의 내사가 선행됨을 볼 때, 정우갑을 예의주시하여 소환조사를 한 시점부터 조봉암과 관련된 내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경찰은 동 규칙 제11조 수사사무보고에 따라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는데, 11월부터 관련 보고가 시작된다. 수사는 이미 기소했거나 수사 중인 수많은 간첩 사건들과 조봉암의 연관에 대한 조사와 조봉암 개인과 진보당의 이적성에 대한 조사의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남파간첩으로 체포된 박정호, 유완식, 한승격, 최봉래와 비슷한 시기 남파간첩으로 체포되어 11월 11일부터 조사를 받은 김00 등 7명²⁴⁾ 모두 진보당 침투 지령을 받고 남파되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로 진보당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수사보고가 11월 29일에 작성되었고, 다음날 문서 상단에 “비(秘)”라고 기재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수사보고(11월 30일)」가 만들어졌다. 박정호 등 검거된 남파간첩들의 증언들이 첨부되면서 진보당에 대한 간첩 혐의를 “확신”하는 수사보고는 11월 말에 마무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진보당의 정책과 평화통일 노선의 이적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론적 근거와 배경 조사가 중요했던 만큼 이와 관련된 수사는 간첩 혐의의 입증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길었다. 먼저 11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서상일, 송남현, 양우조, 최익환, 김성숙 등 혁신계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진보당의 사상과 평화통일 노선이 북한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조봉암 개인에 대한 신문 자료, 박헌영 편지 사건, 공산당·사회주의 사상 관련 문헌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시작 후 두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조봉암과 관련된 「수색 보고(1958년 1월 4일)」가 작성되면서, 진보당의 이적성 혐의에 대한 입증 증거가 완성되었다. 이후 생산된 「수사보고(1월 9일)」는

24) 7명은 김우인, 이봉찬, 홍태준, 권정봉, 전건영, 이병의, 홍중황이다.

내사의 결과가 총정리된 최종 보고서로, 앞서 조사한 모든 입증 자료가 경찰관 의견과 함께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내사단계의 자료가 보고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 수사단계 기록은 주요 기록군에는 3~11권에, 하부 기록군에는 23~26권에 집중되어 있다. 양이섭사건 기록군에는 34~40권(특무대)에 수록되어 있다. 수사단계의 기록은 주요 기록군과 양이섭사건 기록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록군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부 기록군 수사기록도 주요 기록군과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먼저 주요 기록군의 수사단계 기록을 살펴보자. 수사단계 기록의 시작은 진보당 주요 간부들이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생산된 「피의자인지 보고서」이다. 뒤이어 주요 간부들과 조봉암에 대한 「구속영장」과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범죄사실」이 인물별로 편철되어 있다. 「구속영장」은 형소법(1954) 제75조 1항에 의해 범죄사실을 필수로 적시하여야 한다. 주요 기록군 기록에 나타난 진보당 주요 간부들의 범죄사실은 이동화만이 필사로 작성되어 있고, 조봉암, 윤길중, 조규택, 박기철, 조규희는 모두 동일 양식으로 인쇄된 범죄사실이 편철되어 있다. 경찰은 주요 간부들의 범죄사실을 미리 작성하여 복본을 만들어 놓았던 것으로 보이며 수사 초기 주요 간부들의 범죄사실은 “공산평화 공세에 호응한 이적(利敵) 정당을 결집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모두 같았다.

진보당 주요 간부들은 일제히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그 영장의 유효기간은 모두 1958년 1월 30일로 같았다. 형소법(1954) 제202조와 제203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10일 이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하며,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구속기간의 연장은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령에 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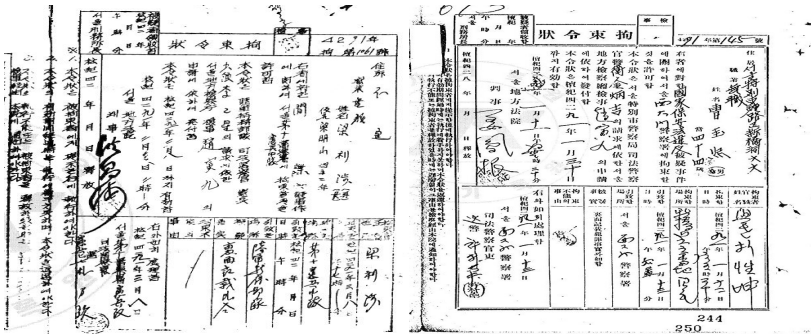
면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최장 10일의 구속기간이 주어지는데, 최초의 구속 산입 시점인 12일로 초일불산입 기산을 하면 경찰에서 신청 가능한 구속기간은 1월 22일까지가 된다. 주요 간부들에 대한 구속 송치는 1월 21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송치에 대한 절차적 위반 요소는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영장의 유효기간을 1월 30일로 한 것은 체포 단계에서 검찰 송치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영장 유효기한을 의도적으로 길게 산정한 것으로,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영장 발부의 효력 및 신체 구금의 기간을 과도하게 넓게 정의하여 범죄혐의를 예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부 기록군에 등장하는 피의자들에게는 훨씬 더 긴 최대 30일이 유효한 영장이 발부되었다. 모두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인신구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장기로 설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양이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양이섭이 특무대에 의해 불법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재심에서 가장 중요한 사유였고 이는 모두가 아는 명백한 사실이다. 기록을 보면 양이섭은 2월 11일부터 자필 진술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특무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 연구에서는 양이섭에 대한 구속영장이 1958년 2월 25일에 발부²⁵⁾되었고, 3월 8일에 영장을 집행했다고 나오는데, 기록 원본을 보면 그것이 사실인지도 불투명하다. 양이섭에 대한 구속영장은 피의자로 전환되어 12번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이후인 3월 2일과 3월 3일 자로 작성된 참고인 진술서 사이에 편철되어 있다. 기록은 시간순에 따라 편철되는 것이 원칙임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은 3월 2일 혹은 3일 사이에 발부된 것이어야 한다. 그제 아니라면 순서를 무시한 편철이며 의도가 있는 편철이다.

25) 2월 25일 발부되었다는 근거의 시작은 2007년 진화위 진실규명 보고서에서 최초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특무대가 2월 8일 양이섭을 연행하여 여관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2월 25일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진화위(2007, 1099) 김윤경도 2011년 석사학위 논문에서 위 보고서와 같이 구속영장 발부 시점을 2월 25일로 보았다. 김윤경(2011, 35)

양이섭의 구속영장은 의문투성이의 기록이다. 양이섭의 구속영장은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과 비교할 때 이상한 점이 많다. 특히 양이섭의 구속영장에는 훼손되어 식별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구속일시이다. 조규희의 영장을 살펴보면 구속영장 발부일시와 구속일시, 구속한 장소, 인치일시 및 장소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영장의 유효기간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양이섭의 경우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3월 8일로 식별이 가능하지만 영장 발부일시는 기준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날짜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다. 그리고 영장 하단에 구속일시로 유추되는 부분을 보면 3월 8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속영장의 유효기간과 같다. 영장 발부일시는 2월 일자 불명, 영장의 유효기간은 3월 8일, 구속일자 3월 8일로 영장집행의 유효기간을 딱 채운 구속이었다. 양이섭에 대한 특무대의 수사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이었듯이 관련 기록도 신뢰성, 진본성, 무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3〉 구속영장 비교



좌측: 양이섭의 구속영장, **우측:** 조규희의 구속영장. 영장은 정해진 서식 내에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양이섭의 구속영장은 조규희의 영장에 비해 불명확한 것이 많다. 특히 발부 일자를 2월 25일이라고 유추할 만한 근거가 없다.

구속영장 집행 이후 본격적인 경찰 수사단계의 기록은 1958년 1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윤길중의 진술서이다. 수사단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기록은 피의자신문조서(이하 피신)와 진술서²⁶⁾이다. 피신은 형소법(1954) 제244조에 의해 작성되었다.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서를 작성한 후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들리게끔 읽어야 하고,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이나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후 오기가 없음을 진술하면 조서에 피의자가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생산되었을 때 증거능력을 갖춘 조서가 된다. 조서를 작성한 후 피의자에게 열람하거나 낭독하는 과정을 법령에 규정한 것을 보면 조서는 입회한 경찰관 또는 검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서는 또한 수기로 작성되기 때문에 자연히 진술의 수정 과정이 모두 반영되는 것이 특색²⁷⁾이라 할 수 있다. 피의자(참고인, 진술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진술서는 형소법(1954) 제48조에 따라 작성되며 군법에서는 구공서(口供書)라고도 불린다. 진술서는 대부분 1, 2차 피신을 마무리한 후 정리 차원에서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다. 조봉암의 경우 총 6회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양이섭의 경우 총 3회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주요 기록군에서 피신과 진술서는 4~11권에 집중되어 있다. 윤길중, 조규택, 이동화, 김달호, 조봉암 순으로 피신을 받았으며, 이후 조규희, 박기출, 신창균 등이 진보당 구성과 강령, 통일문제를 포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신문을 받았다. 초기 피신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26) 자공서(自供書)라고 하기도 한다.

27) 타자기 도입 이후부터 피신은 수정 이후 완성된 조서에 서명·날인한 최종문서만 남아있고 최종문서 이전의 수정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는 공식 문서로 인정받지 못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되어 수정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생산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게끔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피신의 경우 업무관리시스템이 아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으로 생산되어 수정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는 누락 되고, 최종 원본만 증거력이 있는 피신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심층 조사가 이루어졌다. 6권부터는 피의자들에게 진보당 결성의 전 과정에 대해 신문했는데, 김달호에게는 진보당의 자금과 정우갑과의 관계를 주로 신문했다. 조봉암에게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당 활동, 박헌영 편지 사건, 농림부 장관 재직 시절의 활동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문했다.

진보당의 이적성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수사의 방향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는 진보당 형사사건기록 7권(1958년 1월 17일)에 나타난다. 오랫동안 내사해온 간첩 관련 수사기록과 비밀당부, 특수당부에 대한 수사기록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7권에서는 간첩과 관련한 대부분의 수사(박형하, 윤명환)가 입증되지 못하고 마무리되었지만, 8권부터는 조봉암을 중심으로 새로운 간첩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며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간첩과의 연결이 시작²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간첩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혐의, 즉 진보당의 비밀당부, 특수당부에 대한 수사기록이 9~10권에 나타난다. 주로 정태영의 비밀강평서와 관련된 수사기록, 이동화와 이상두 관계에 대한 수사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9~10권의 진보당 비밀당부 관련 수사는 하부 기록군이 만들어질 만큼 별개 수사로 확대되었다.

11권에는 경찰 수사단계의 마무리라 할 수 있는 「수사보고서(1월 22일)」가 수록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경찰국장에게 보고된 것이다. 사건 정리단계에서 생산된 이 수사보고서는 그간의 수사를 요약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국가 변란의 목적으로 진보당을 결성하고 평화통일을 주창하였다는 최초의

28) 조복재라는 남파간첩이 특무대 조사에서 조봉암이 김약수를 통해 북한에 연락원을 밀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고 이를 근거로 1월 17일부터 간첩 혐의에 대한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조봉암뿐만 아니라 김달호도 이영근과 연결된 대일공작원으로 추궁당했고, 박정호, 정우갑과의 회동 사실을 조사받았다. 김달호, 박기출, 조봉암의 간첩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로 주변 참고인 진술(이영근, 박형하, 김제영 등)이 이루어졌다.

범죄혐의에 지하 비밀조직 결성 혐의가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사 보고서 이후 조봉암의 마지막 피신과 자공서, 진술서가 첨부되고, 이동화의 마지막 피신이 첨부되면서 주요 기록군의 경찰 수사기록은 종결된다.

경찰은 1월 21일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검찰 수사기록은 1월 21일 조봉암의 첫 피신으로 시작된다. 조인구 검사는 주요 기록군 피의자에 대한 최초 수사를 서울시경찰국 사찰과에서 일제히 실시했다. 검찰 수사기록은 12권부터 13권 중반까지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강하는 피신이다. 여기에 간첩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진술이 추가되었다. 하부 기록군 역시 2월 7일 검찰로 송치된 후 사건별로 27권, 31권, 32권, 33권에 검찰 기록이 편철되어 있는데, 대부분 경찰 수사를 답습하는 수준의 수사기록이다. 공안사건에서 검찰 수사는 경찰 수사를 검증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조인구 검사는 주요 기록군 및 하부 기록군 관련자들에 대하여 모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1회 하였으며, 주요 기록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2월 8일 기소하고, 하부 기록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2월 24일 기소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²⁹⁾

이상으로 주요 기록군과 하부 기록군에 수록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사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신과 진술서에서 유의미한 특징이나 의혹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 기록군이 하부 기록군보다 피신의 내용적 수정이 조금 더 많았다는 특색이 있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고, 피신을 작성하는 작성자의 스타일이나 필체에 따라 오기에 의한 수정이 나타났다는 것 정도가 특징이라 하겠다. 물론 하부 기록군 피의자들이 일관되게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한다는

29) 하부 기록군 주요 사건 피의자들은 모두 2월 24일 기소되었다. 정태영은 1월 25일 송치, 전세룡은 2월 13일 송치 3월 3일 기소, 이상두는 2월 17일 송치 3월 7일 기소가 이루어졌다.

점이 의혹으로 부각 될 수 있겠지만, 기록 자체에서 고문과 강요에 의해 진술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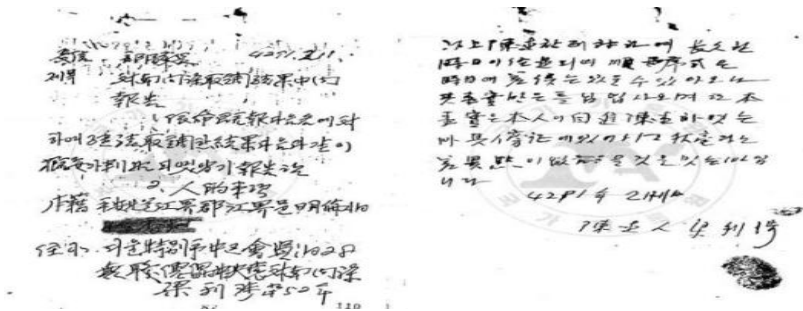
그러나 양이섭사건 기록군에는 수사기록에서부터 위법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양이섭사건 기록군은 특무대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의견서(1958년 3월 10일, 34권)」로 시작된다. 특무대 기록 또한 경찰 기록과 마찬가지로 의견서 이후 수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시간순으로 편철되어 있다. 수사단계의 시작은 1958년 1월 9일 김동혁이라는 간첩과 연관이 있는 용의자 양장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문서이다. 이에 상부는 내사를 지시했고, 양장우의 소재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연이어 내려졌다. 양장우에 대한 수사가 보고되고, 1월 15일까지 검거를 위해 잠복수사를 펼쳤다. 그러다 3주가 지난 후 2월 8일 양장우를 검거했다는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그 보고서 안에 대북 사업을 하며 북한을 왕래한 대체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2월 11일 양이섭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조봉암과 관련된 간첩 혐의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이 진술서를 시작으로 양이섭은 12번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양이섭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엄숙진, 달러상 이정자, 조봉암의 조카 조규진, 조봉암의 운전기사 이재윤, 조봉암의 딸 조호정 등이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봉암은 2월 19일 처음 신문 받은 후 3월 2일까지 총 8회 조사를 받았다.

특무대에서 생산된 수사기록은 당시 1심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력 논란이 제기되었던 기록이다. 1심 최후 변론에서 김봉환 변호사는 특무대에서 생산된 수사기록에는 특무대의 시나리오에 유리하도록 날짜가 수정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증거보다는 피의자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에서 기록 원본이 훼손된 것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기록이 바로 특무대가 작성한 「대남간첩 취조 결과 중간보고(2월 11일)」이다. 이 보고는 연이어 편철된, 양이

섭이 자필로 작성한 최초 진술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인데, 실제 기록을 확인해보면 날자 표기에서 3월이 2월로 수정된 흔적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와 함께 특무대가 최초로 작성한 「간첩 검거보고(2월 8일)」에도 비슷한 의혹이 존재한다. 양이섭의 4회 월북이 9회로 수정된 것이다. 특무대 기록은 수기로 기록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수사기록과는 달리 오기에 의한 수정이 많은데 특히 날짜가 고쳐진 부분들이 많다. 엄숙진의 진술서에도 12일이 19일로 수정되어 있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들의 기록에도 날짜가 의도적으로 수정되어 있다. 우리는 앞서 피신 및 각종 조사 작성 시 오기에 의한 수정과 증감이 있을 경우 수정된 사실을 기록에 남겨야 함을 확인하였다. 경찰 수사의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곳에 도장을 날인하여 증거의 효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특무대 수사기록에서는 도장으로 날인하여 수정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형소법(1954) 제244조를 위반한 것이다.³⁰⁾

〈그림 4〉 양이섭 수사기록



30) 물론 특무대가 작성한 진술조서 대부분 오기에 의한 수정 과정을 거쳤다. 다만 의혹의 중심에 섰던 특무대 수사보고에서는 날짜의 의도적인 수정이 빈번했다. 이에 비해 경찰이 작성한 주요 기록군과 하부 기록군의 다양한 수사보고에서는 날짜의 오기나 수정은 전혀 없었다.

에서는 수정의 과정이 전혀 기록화되어 있지 않다. 언제 어떻게 수정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기록으로 이는 무결성을 유지하지 못한 기록이다. 즉 양이섭사건 기록군은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조사하였다는 위법성과 더불어 유죄의 유일한 증거인 수사기록 역시 그 증거력을 의심할 만한 요소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섭은 검찰 조사에서 특무대 조사를 인정했고, 1심 공판과 변호인과의 면담에서도 일관된 모습으로 혐의를 인정했다. 조봉암 측 변호인단은 간첩 혐의로 병합 기소된 양이섭과의 접촉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으며, 이중간첩의 혐의가 확인될 무렵, 이미 검찰 조사는 종결되고,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4. 재판기록: 기록의 증거능력

진보당 사건의 재판기록은 13권부터 22권까지 편철되어 있다. 13권부터 17권까지는 1심 재판기록이며, 18권부터 20권까지는 접견 기록과 2심 재판기록이고, 21권부터 22권까지는 3심 대법원 기록과 재심 관련 기록이다. 재판기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판조서다. 진보당 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소법(1954) 제51조에 의해 작성되었다. 동법 제51조 1항에 따라 조서는 공판에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작성했고, 소송절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판 과정 전체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동법 제52조 특례에 따라 공판조서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는 과정, 진술자가 서명·날인하는 과정은 없었다. 따라서 실제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서기가 기록한 조서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다. 물론 진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증감이 가능하지만, 실시간 진행되는 공판에서 즉각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매번 거치긴 힘들었을 것이다. 다만 동법 제54조에 공판기일

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신속히 정리를 하여야 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서에 대한 변경과 이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정할 수 없었던 내용을 차후에 수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공판조서의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록보다는 공판정의 현장감과 진술의 생생함이 잘 살아있다.

진보당 사건의 공판은 이미 서명 날인되어 증거로서의 효력이 완성된 수사기록이 사실은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에 기초한 것이며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항변하는 피고인들과 수사기관의 싸움이었다. 형소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 등의 방법으로 자백했음을 의심할 수 있을 때 이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공안사건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해 수사기록이 조작된 사례³¹⁾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이 경찰-검찰로 이어지는 수사과정에 협조하다 공판이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진보당 사건도 예외는 아니었다. 진보당 사건은 거물급 정치인들과 간부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이들에 대해서는 고문 등 가혹한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수사기록 속에서 절차적 적법성, 정당성을 확보한 조사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 그러나 하부 기록군 수사기록에 포함된 비밀조직, 특수당부 관련자들의 경우는 달랐다. 이들은 진보당 내 젊은 그룹에 속했던 인물들로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 때문에 공판정에서 수사기록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며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비밀조직과 관련된 사건의 공판조서는 1심 제6회~제7회 공판(14권),

31) 전명혁(2008, 36-39).

제8회 공판(15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사기록이 허위라는 진술은 비밀조직 여명회 회장으로 지목된 권대복의 제6회 공판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권대복은 경찰조사에서 안준표의 지령에 의해 지하조직 여명회를 만들고 각 대학에 세포책을 구성하였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공판정에서 여명회는 지령에 의해 만들어진 비밀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명회가 진보당과는 관련이 없는 단순 독서 모임이며 독서 모임 주소록을 세포책으로 경찰이 조작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제7회 공판에서는 정태영, 전세룡의 진술이 시작되었다. 정태영은 여명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고, 전세룡 역시 비밀당원과 비밀당부는 없고 지하조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지방 당부 조직 때 수차례 테러를 당한 일이 있어 문건을 숨겼을 뿐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연이어 제8회 공판에서 전세룡은 당원명부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경찰이 고문하여 비밀문건을 가지고 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고 검찰에서도 조인구 검사의 악명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전세룡, 김정학(은닉자)에 수사기록을 읽어주며 심문을 이어갔지만, 이들은 사실과 다르며 경찰이 허위로 작성한 기록이라는 진술만 반복했다. 하부 기록군 관련자들의 유죄의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신과 진술서였다. 다른 증거로는 문건을 인멸한 사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1심 판결에서 하부 기록군 관련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문건을 인멸한 사실이 있는 전세룡, 김정학만 유죄를 선고받았다.³²⁾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보강 증거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본격적인 싸움은 2심부터 시작되었다. 양이섭이 자백을 반복한 것이다. 1심에서 양이섭은 특무대 수사기록이 사실임을 순순히 시인했다. 그는 5년 형의 판결을 받은 것에 희망을 갖

32) 이 글에서는 깊게 다루지 않았지만 하부 기록군에 포함된 통방사건 관련자 이동현 역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역시 통방쪽이라는 실물 증거가 존재하는 이에 한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 된 것으로 보인다.³³⁾ 이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변호사와 양이섭의 접견 기록에 명백하게 나타난다. 접견 기록은 2장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19권에 편철되어 있으며, 양이섭 사건의 공소 시점(4월 2일)부터 2심 1회 공판(9월 8일) 사이에 변호인과 양이섭이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아마 양이섭뿐만 아니라 조봉암과 사건 관련자들 대부분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 향후 재판 진행과 진술 방향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다. 또 양이섭 역시 9월 8일 이후에도 변호인과 계속 만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이 접견 기록만 증거로 편철된 이유는 검사 측에서 확인해야만 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판 출석 전 초기 접견에서 양이섭은 북한이 지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날짜나 사실이 다른 것이 많으니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설득했지만 양이섭은 변호인의 질문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였다. 변호인은 1심이 진행되는 동안 특무대 기록의 사실 여부에 대해 끊임없이 확인했지만 양이섭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5년 형을 선고받고 2심이 시작되기 전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특무대에서 조서를 조작했다고 최초로 진술했다.

이후 2심 제1회 공판(9월 4일)에서 양이섭은 변호인과의 약속대로 특무대에서의 진술 모두가 거짓이라고 공개적으로 번복했다. 먼저 북한에서 조봉암에 대한 평가가 인색하지 않다고 한 것은 북한 방문 시 숙소에 있던 『박헌영 재판기』에서 조봉암의 전향은 박헌영 본인의 책임

33) 면담 초기 침묵으로 일관하던 양이섭은 공판 출석 후부터 점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수가 아닌 연행으로 표현된 점에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며 고영섭과 조인구 검사와의 접견을 요구,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단식을 하고 목숨을 끊겠다는 극단적 행동을 보였다. 이는 1심 공판정에서 조봉암의 계속되는 부인, 고영섭 및 조검사와의 모종의 거래가 깨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5년 형을 선고받은 후 변호사와의 면담에서 양이섭의 태도는 낙관적으로 변했다. 판사의 도량에 감복했다며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다짐하는 부분에서 삶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다.(19권)

이라고 하는 최후진술을 읽은 일이 있다고 말한 것을 특무대에서 조서로 조작한 것이라고 진술했다³⁴⁾. 진술을 반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무대 수사 과정에서 약에 취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진술을 반복하지 않은 이유는 진술을 유지하면 조 검사가 석방해 줄 것임을 암시했기 때문이며, 1심에서도 자백을 유지해야만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이기에 반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회 공판에서는 3장에서 설명한 문제의 진술서에 대한 진실 고백도 이어나갔다. 3월 10일에 작성한 진술서를 특무대에서 2월 10일로 고칠 것을 지시하여 허위로 고쳤다고 진술했다. 2월 8일 검거보고의 4차례 내용이 9차로 수정된 것도 특무대에 의해 고쳐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달러의 출처는 대만 상인 한자방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금액은 특무대에서 강요하는 대로 동의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형소법(1954) 제310조는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 이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판정에서 진술이 반복되고 수사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양이섭의 진술 반복은 검사의 공소 유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진술조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거수집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다. 달리 출처와 관련된 한자방에 대한 조사는 불가로 결론이 났고, 특무대의 정보 서류·도표, 양이섭의 HID 귀환보고서, HID에 보고된 물품목록과 양이섭의 물품목록 대조 조사는 모두 기각되었다.

양이섭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진술조서”가 고영섭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다. 12회에 걸친 양이섭의 피신조서는 모두 고영섭의 필체로 작성되었다. 피신조서의 필체는 양이섭의 자필 진

34) 진보당 사건을 내사하고 있을 당시 경찰은 범죄혐의의 증거로 조봉암이 쓴 박헌영 편지를 첨부했다. 특무대 조사에서도 북과 조봉암을 엮기 위한 매개체로 박헌영이 등장했다. 그때는 변질의 증거가 됐던 그 편지가 이번에는 야합의 증거로 활용되었다.

술서(3회)의 필체와 달랐다. 고영섭이 직접 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내용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³⁵⁾ 진술서 날짜 수정 의혹도 기록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보강조사를 지지하지 않았다. 특무대 조사가 조작됐음을 입증해 줄 증거가 없었고(찾지 않았고), 특무대 조사의 강압성, 불법성을 증언해 줄 증인도 없었다(부르지 않았다). 변호인과 양이섭의 접견 기록³⁶⁾, 통방 쪽지 모두 조봉암 측에서 양이섭을 회유하는 행위로 해석할 여지를 주어 불리한 증거로 작용했다. 변호인 측에서도 이미 만들어진 수사기록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양이섭의 수사기록은 형소법(1954) 제312조(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의 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에 따라 1심 공판에서 그 증거력을 인정받았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1958년 재판이 진행되던 당시에도 형사소송법은 일제강점기 고문 경찰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여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상당히 제한했다.³⁷⁾ 양이섭이 이

35) 고영섭은 검사 측의 증인으로 출두했다. 고영섭은 양이섭 스스로 자진해서 나오는 말을 메모했다가 도표를 작성했고, 기본조사를 마친 후 종합 정리한 도표를 활용하여 직접 조서를 작성했으며, 낭독하고 확인시키는 과정을 거쳤다고 진술했다. 조사에 있어 위법성이나 강압은 없었으며 건강을 염려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그렇다면 정보자료와 도표를 활용하여 직접 조서를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고영섭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36) 변호인과의 면담에서 양이섭은 조 검사와도 면담을 했다는 말을 했고, 조 검사가 석방이 되면 남한에 정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식의 회유를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관련 면담 내용은 기록이 없었던 것인지 기록은 있으나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회유의 증거로 편철되지 않았다.

37) 이러한 관례는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까지 이어졌다. 현재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력을 제한했다. 마침내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피신 조서 증거력이 같은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검찰 조사, 1심 재판에서라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양이섭은 변호인 및 조력자의 접견이 불허된 공간에서 조사를 받았고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에 임해야 했다. 조봉암 측 변호인단도 양이섭이 남파간첩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채 재판을 준비하다, 그가 이중간첩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접촉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1심 공판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였다³⁸⁾. 2심에서 양이섭의 양심고백이 시작되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형소법(1954) 제 308조 자유심증주의에 의거해서 원심 5년을 파기하고 사형이라는 최고형을 내렸다.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사항인 동법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기도 했다. 이 판결은 진보당 간부들과 당원들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진보당 간부와 당원들에게 평화통일 지령을 실천하고 북한의 자금으로 운영된 진보당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최대 3년에서 최소 2년 형을 선고했다.

〈표 2〉 진보당 사건 공판 결과

피고인	1심판결	2심판결	3심판결	유죄 근거
조봉암	5년	사형	사형	피신
양이섭	5년	사형	사형	피신
이동현	1년	1년	1년	통방쪽지

38) 이는 김봉환 변호사의 회고에서도 나타난다. 김봉환 변호사는 공판 초기까지 양명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고, 특무대에서 거물 간첩을 조사한다는 보도만이 떠돌았다고 회고했다. 따라서 초기 남파간첩으로 보고 변호인단이 몸을 사렸는데, 조서를 보니 구체적인 루트나 왕복로가 나와 있지 않아 모 증령을 통해 조사를 부탁했고, 양이섭이 HID 소속 요원이라고 알려주어 그제야 의문을 풀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때부터 변호인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양이섭 변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이영석(1983, 54-55).

피고인	1심판결	2심판결	3심판결	유죄 근거
김정학	1년	1년	1년	비밀당부 증거인멸 문건
전세룡	10개월	2년	2년	비밀당부 증거인멸 문건
이상두	무죄	2년	2년	불온편지
간부 및 관련자	무죄	2년~3년	무죄	없음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은 앞선 재판보다는 훨씬 더 신중했다. 재판부는 증거주의에 기반하여 실물의 증거가 있고 범죄혐의가 명확한 행위에 한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에 따라 비밀당부 증거 은닉의 혐의로 전세룡이 2년, 유혈적 혁명을 선동하는 서신을 보낸 이상두가 2년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진보당 간부 및 당원(통방사건 관계자 제외)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여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조봉암과 양이섭 역시 증거에 충실하여 2심 판결 그대로 사형을 확정했다. 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것은 2심에서 반복되었지만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양이섭의 피신과 진술서, 조봉암과 양이섭이 만나고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나타난 참고인(향후 피의자로 전환된)들의 진술조서였다. 조봉암과 양이섭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³⁹⁾ “만

39) 이제는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자백보강원칙’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비슷한 일례로 1989년 서경원 방북 사건을 들 수 있다. 안기부는 1988년 북한에 밀입국한 평민당 소속 서경원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평민당 지도부와 김대중 총재까지 수사의 범위를 넓히려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5공 청산 바람으로 수세에 몰려 있던 노태우 정권은 이 사건을 김대중과 평민당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안기부와 검찰은 김대중이 북한 공작금 1만 달러를 수수하고 방북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는데 기소의 근거는 방양균 비서관의 자백이었다. 그러나 안기부는 비서관의 자백 이외 금품수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1991년 강경대 사건으로 시작된 공안정국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공소를 취하였다. 무리하게 자백 하나만으로 간첩을 만들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들어진 기록”의 승리였다.

5. 결론

조봉암에 대한 사법적 살인으로 결말이 지어진 진보당 사건을 재조명해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기록이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방대한 기록이 생산되어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실규명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학자들의 연구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탐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진실규명 차원의 연구나 역사학적 연구와는 달리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어떠한 규정에 따라 생산되고 편철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춘 기록학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총 44권으로 생산된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기록군(Records Group)이라는 기록학적 개념을 적용하여 사건 내용에 따라 3개의 기록군으로 나누었다.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사건기록을 주요 기록군(1~22권과 43~44권)으로, 주요 기록군에서 파생되어 수사된 사건기록을 하부 기록군(23~33권)으로, 양이섭에 대하여 조사한 사건기록을 양이섭사건 기록군(34~42권)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후 사건기록의 생산과 정리, 편철의 전 과정을 생산기관별로 위임된 당시의 법령과 규칙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형사소송법(1954)」이라는 상위법령 아래 경찰은 「사법경찰관집무규정(1912)」과 「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1959)」에 따라, 검찰은 「검찰청사무규정(1956)」에 기초해서, 법원은 「조선총독부재판소급검사국서기과처무규정(1937)」에 의거해서 기록을 생산, 정리, 편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 생산된 수사기록을 살펴보았다. 이 사건은 경찰이 미리 내사한 사건인 만큼 초기 내사기록이 1~3권에 이를 정도로

분량이 많았음을 확인했다. 주요 기록군은 조봉암과 진보당 주요 간부들에 대한 수사기록으로 일부 절차적 위법성을 의심할 지점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기록의 생산과 정리 및 편철이 절차적 적법성을 담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하부 기록군과 양이섭사건 기록군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특히 양이섭사건 기록군의 경우 구속영장이 훼손되어 구속영장의 발부 시점과 구속 시점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무대 수사기록의 위법성도 원본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무대 수사기록은 기록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 필수적으로 견지해야 하는 기록학적 속성인 신뢰성, 진본성, 무결성 모두가 결여된 기록임을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진보당사건 재판기록을 살펴보았다. 재판은 경찰과 검찰에서 생산한 수사기록을 주요 증거로 그 유무죄를 가렸는데, 주요 기록군보다 하부 기록군의 피의자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위법성에 대해 더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양이섭 역시 진술을 번복하며 피신의 증거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이섭의 피신은 1심 공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었고, 이후 사형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당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신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1심 공판에서라도 수사내용을 번복했다면 재판부의 판결은 더 신중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1심 공판에서 피신을 번복한 하부 기록군 관련자들이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은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생산기관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을 생산, 정리, 편철했고, 세부 사건에 따라 나름의 질서를 유지한 기록군을 형성했다. 다만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에는 교정기록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교정 기록 중 변호인 접견 기록 일부가 증거로 신청되어 사건기록에 편철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형수 조봉암과 양이섭의 수용인기록부가 별도로

존재할 것이며 그 속에 이들에 대한 교정기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사형집행명령서, 사형집행조서 같은 기록들, 변호인들과 면담한 접견 기록이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형사사건의 마지막 단계에 생산된 교정기록을 발굴하여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의 편철이 완결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 국가기록원(2008).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대전: 디디컴.
국가기록원(2019). 기록관리 이슈 페이지: 공공기록물법상의 기록의 개념 검토. 대전.
이영석(1983). 죽산 조봉암 그의 슬픈 삶과 죽음의 이야기. 서울: 원음출판사.

〈학위논문〉

- 강선옥(2010). 형사사건기록의 연계관리체계 구축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 전공.
고석(2006). 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성립과 개편 과정에 관한 연구: 국방경비법에서 군법회의 제정 시까지.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병호(2007). 사건기록물의 관리실태와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김윤경(2011). 진보당 사건 관련자 양이섭의 실체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서인(2020).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활용을 위한 공기업 기록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원종관(2008).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최영민(2018).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기록학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연구논문〉

- 김재순(1998). 정부 수립 이전 행정기록 해제. 기록보존, 11, 189-195.
- 박보영(2021). 형사재판 기록의 사료적 활용 제언: 진보당 사건기록의 미시사적 재독. 한국사학사학보, 42, 237-262.
- 박성진(2017). 형사사건기록 편철, 보존기간 책정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189-205.
- 박종연(2021). 미군정기 기록관리: 혼용의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17-36.
- 설문원(2022). 법적 증거의 기록학적 의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1), 219-235.
- 시귀선(2000).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해방 이후 행정기록의 내용과 활용방안. 역사연구, 7, 203-221.
- 안유림(2009). 일제 치안유지법체제하 조선의 예심제도. 이화사학연구, 38, 133-156.
- 오유석(2008). 진보당 사건 국가기록원 편.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대전: 디디컴. 128-172.
- 윤은하(2019).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속성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60, 89-121.
- 이경용(2021). 일제의 공문서 폐기 시론: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기록의 잔존성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7, 205-236.
- 이승일(2010). 법원기록관리체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31-53.
- 이용창(2018). 재판 관련 기록으로 본 화성 장안·우정면 3·1만세 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2, 37-86.
- 이현정(2010). 형사사건기록의 분류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169-197.
- 임지훈, 오효정, 김수정(2017). 사건 아카이브의 시론적 연구. 기록학연구, 51, 175-208.
- 정병욱(2014).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기록과 '사상부'의 설치. 기록학연구, 40, 95-130.
- 최병천(2012).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법조, 674(11), 53-96.
- 한연규(2019).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활용에 대한 고찰. 법조, 735(3), 233-261.

〈연구보고서〉

- 사법정책연구원(2023).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연구총서 2023-02). 사법정책연구원.
- 송영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0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7. 하반기조사보고서: 진보당 조봉암사건. 1069-1144.
- 치안정책연구소(2005). 경찰수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2005-13). 치안정책연구소.

〈법령〉

검찰청사무규정. 법무부령 제00016호.
검찰청사무규정. 법무부령 제00073호.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01022호.
국방경비법. 군정법률 제00000호.
법원사무규칙. 대법원규칙 제00133호.
사법경찰관집무규정. 조선총독부훈령 제45호.
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법무부령 제00024호.
육군특무부대령. 대통령령 제01316호.
조선총독부재판소급검사국서류보존규정. 조선총독부훈령 제3호.
조선총독부재판소급검사국서기과처무규정. 조선총독부훈령 제16호.
행형법. 법률 제00105호.
행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0112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09호.
형사소송법. 법률 제00341호.
헌병과 국군정보기관의 수사한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00080호.
경찰청 기록관리기준표. 2022.
공문서종별보존기간채정기준. 1964.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 2022.

〈원 사료〉

서울지방검찰청(1958). 형사사건기록: 진보당 사건기록 1~44권.

〈신문기사〉

전국 검찰 감독관회의. (1960. 2. 2.). 동아일보, 3.
괴뢰지령에 호응. (1958. 1. 15.). 경향신문, 3.
시국 수습 곧 가시화 김대중 총재 불고지 공소 취소 검토. (1991. 5. 11.). 경향신문,
1.
특사 258명 확정. (1991. 5. 23.). 동아일보, 1.
검찰발표 김대중 총재 조사 결과 요지. (1989. 8. 23.) 경향신문, 3.
김대중 총재 곧 기소. (1989. 8. 24.). 한겨레, 1.
김삼웅. (2021. 11. 22.). 문익환·서경원 방북사건 공안 위기. 오마이뉴스.

〈웹사이트〉

국가기록원(발행년불명).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진보당 사건(1958-1959년).
국가기록원. 출처: <https://www.archives.go.kr/theme/next/choba/viewMain.do>